

데이터3법.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

개 개인정보 보호법 \supset 정 정보통신망법 신 신용정보법
 관련법 전 자금거래법 온 라이선스연계금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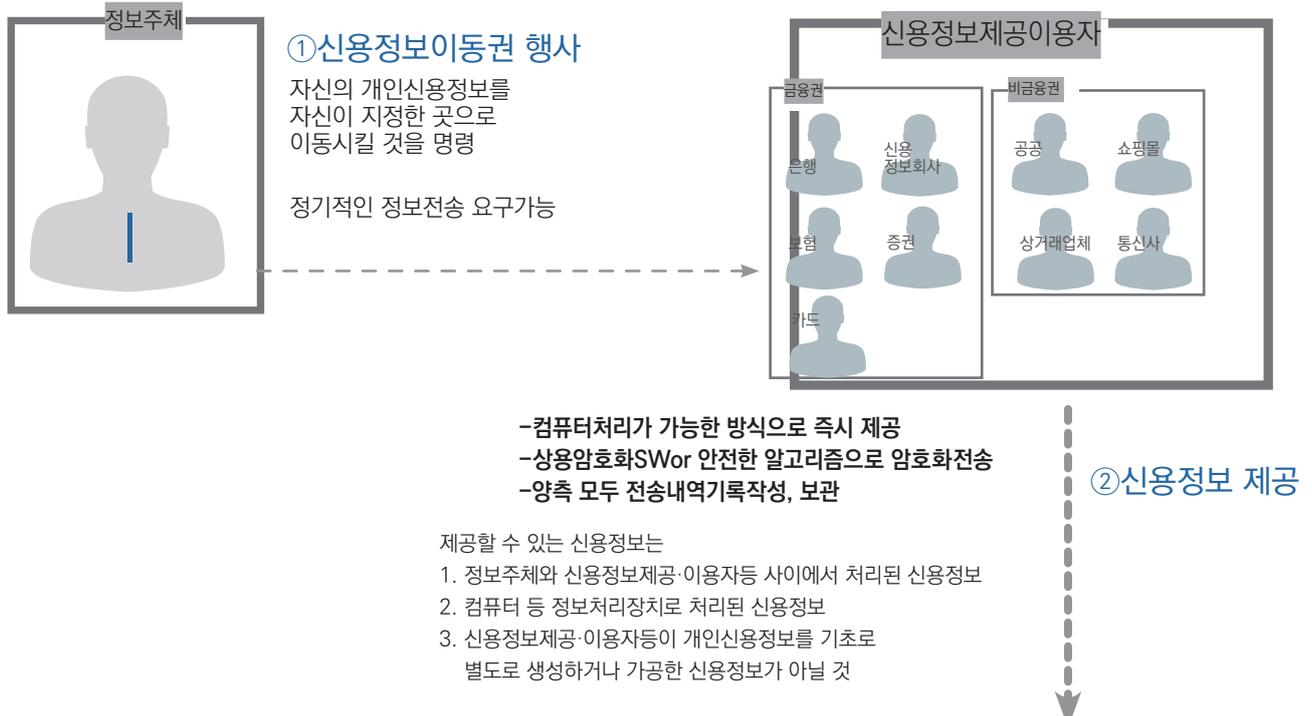
신 신용정보 보호법
2020년 8월 시행

③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 반영 신용정보이동권 등장

개인정보의 제 3자제공 증가					
가명 정보 가 아닌	<p>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td> </tr> <tr> <td> <p>〈신설〉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p> <p>다음은 모두 만족시 동의없이 제3자 제공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목적이 수집목적과 관련 2. 수집정황, 처리관행상 제공이 예측가능 3. 정보주체 or 제3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음 4. 가명처리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가명처리 </td> <td> <p>〈신설〉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가능</p> <p>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p> <p>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p> <p>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p> <p>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p> </td> </tr> </table>	개	신	<p>〈신설〉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p> <p>다음은 모두 만족시 동의없이 제3자 제공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목적이 수집목적과 관련 2. 수집정황, 처리관행상 제공이 예측가능 3. 정보주체 or 제3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음 4. 가명처리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가명처리 	<p>〈신설〉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가능</p> <p>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p> <p>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p> <p>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p> <p>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p>
	개	신			
<p>〈신설〉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 발생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p> <p>다음은 모두 만족시 동의없이 제3자 제공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목적이 수집목적과 관련 2. 수집정황, 처리관행상 제공이 예측가능 3. 정보주체 or 제3자의 이익을 부당침해하지 않음 4. 가명처리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경우 가명처리 	<p>〈신설〉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가능</p> <p>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p> <p>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p> <p>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p> <p>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p>				
<p>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이동권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함)</p>					
개인 정보	<p>신 2020년 8월부터 정보주체의 결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대이동</p> <p>〈신설〉 신용정보이동권 신설 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이동권을 행사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기존금융기관과 신규금융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 비금융CB, 개인사업자CB, P2P연계금융업자) 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함</p>				
가명 정보	<p>통계,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 목적에 한하여 동의없이 가명정보 3자제공</p>				

신

신용정보이동권을 통한 정보제공



정보주체 본인

기존 금융기관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 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은행은 신용정보이동권을 오픈뱅킹으로 구현
 신규Player로 <지급결제사업자> 등장**

신규 금융기관

<마이데이터사업자>
 <비금융CB>
 <개인사업자CB>
 <P2P연계금융업자>

신용정보 수집

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보주체가 공개한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신

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 정보

(령 28조의 3, 령 별표5)

금융 분야

은행 계좌	고객정보	최초개설일,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가입여부
	계좌자산	기준일자, 계좌종류, 현재잔액, 통화코드, 최종거래일,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기본금리, 이자지급일
대출	일반 대출	대출종류, 대출계좌정보, 대출원금, 대출한도, 대출기준금리, 월상환액, 대출잔액, 대출자산 거래내역
	카드 대출	리볼빙이용여부, 월별 리볼빙 이용내역, 단기대출이용금액, 결제예정일, 이자율, 장기대출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만기일
	금융투자대출	대출형태, 대출금계좌번호, 상환계좌번호, 대출잔액, 이자, 대출만기일, 대출 상환일
카드	상품정보	카드사명, 카드상품명, 교통기능, 결제은행, 국제브랜드, 상품연회비
	고객정보	본인/가족구분, 카드번호(마스킹), 발급일자, 신용/체크구분, 결제일, 결제예정금액, 포인트종류,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이용정보	카드명, 사용일시, 사용구분, 결제예정일, 결제예정금액, 할부회차, 할부결제 후 잔액
금융 투자	기본정보	상품종류, 상품명, 계좌번호, 세제혜택여부
	자산정보	매입방법, 매입금액, 보유수량, 매도가능수량
	거래내역	거래종류,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체결내역	종목코드, 주문수량, 주문단가, 체결수량, 체결단가, 체결구분
증권 계좌	고객정보	자동이체 설정금액/설정기간/날짜/입금계좌/출금계좌
	계좌정보, 계좌자산정보	증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계좌상태, 계좌개설일, 세제혜택여부, 예수금, 매입금액
	계좌거래내역	거래일시, 거래종류, 거래후잔액, 종목명,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상대은행명, 상대계좌번호
연금 상품	상품정보	연금종류, 상품명, 가입일자
	연금납입정보	납부총액, 기출금액, 최종납입일
	연금수령정보	연금 기수령액
보험	보험계약정보	계약자명, 보험사, 계약일자, 만기일자,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특약관련 정보
	보험료 납입정보	납입기간, 납입종료일자, 월납 보험료, 최종납입월, 최종납입숫자, 최종납입횟수
	보험료 납입내역	납입 금융기관, 납입일자, 총 납입보험료
보험 대출	대출현황	대출형태, 총원금상환금액, 대출원금, 현재대출잔액, 계좌상태, 신규& 만기일자
	대출상환내역	상환일자, 회차별 원금상환금액

비금융분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이동시켜야 하는 신용정보
공공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한전, 수자원공사 외	국세납부정보 지방세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외	공적보험(고용, 산업재해보상,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보험료납부정보
상거래 업체	통신사	통신료 납부정보 등
	상거래업체	전자상거래정보 등

법규정 보기 _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내용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 신용 정보의 전송 요구	법 33조의2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 부터 제20호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20호의 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자,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조합, 기업신용조회회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령 제28조의3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현재 미정)		

(주)소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20 knk디지털타워 9층

Tel: 02 2636 8300 | Fax: 02 2636 8181 | Email: privacy@somansa.com

copyright (c)1997-2020 SOMANSA ALL RIGHTS RESERVED.

법규정 보기 _ 전송대상 정보

	내용
법 33조의2 2항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령 제28조의3	<p>③ 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조제9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별표5에 따른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
법 33조의2 5항	<p>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제28조의3 제5항	<p>⑤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용정보업규정 제39조의2	<p>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영 제28조의3제5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법 제2조제9의 2호	<p>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제1호의3 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나. 제1호의3 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다. 제1호의3 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라. 제1호의3 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령제18조의6제 4항제6호	<p>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p>

법규정 보기 _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보주체가 공개한정보는 동의없이 수집가능

	내용
법 15조 2항 2호다목	<p>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p>
령 제12조의2	<p>령 제12조의2(수집 및 처리의 원칙)</p> <p>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